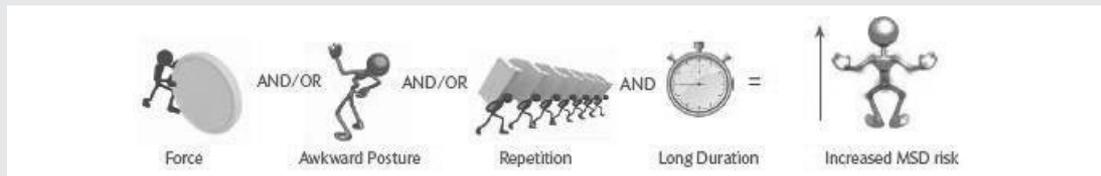


국제 산업보건 동향

캐나다 온타리오 사업장안전보험위원회, 근골격계질환 예방 모듈자료 제공

〈2008년 3월 28일자 WSIB 홈페이지〉

캐나다 온타리오주 사업장안전보험위원회(WSIB)에서는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모듈자료를 제공,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본 모듈을 활용하여 근골격계질환의 예방활동에서 재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근골격계질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


◎ 근골격계질환이 온타리오주에서 발생한 근로시간손실 보상금의 42%를 차지하고, 1996년부터 2004년까지 근로시간손실로 인한 직접적 비용은 캐나다달러 30억(약 3조원)에 달하는 등 직·간접적 비용을 모두 합산할 경우 캐나다달러 120억(약 12조원)에 육박하고 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업장안전보험위원회(WSIB)는 캐나다 연방 노동부, 온타리오 안전보건위원회(OHSCO), 근로건강연구원(IWH), 근골격계질환예방 전문연구센터(CRE-MSD) 및 각종 안전보건 관련협회 등과 공동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 모듈 및 참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.

◎ 근골격계질환 예방 모듈자료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사업주, 근로자 및 작업장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.

- ① 근골격계질환 및 위험성에 대한 이해
- ② 근골격계질환 감소를 위한 현장 점검사항 및 작업환경 확인
- ③ 상해·사고 기록 검토 및 근로자·관리감독자 등과의 면담 실시
- ④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 보고사례에 대한 파악 후 지속적인 관찰 실시
- ⑤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위험요인 확인 도구(MSD hazard ID tool)를 활용한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 표시



- ⑥ 근골격계질환 위험성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별 분류
- ⑦ 근골격계질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관리 대상 작업방법 선정
- ⑧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 및 관리방법 검토 등
- ◎ 아울러, WSIB에서는 허리 관리 프로그램 (Back Care Program), 건설업에서의 요통질환(Back Pain in Construction), 중장비 운전자의 건강상 위험요인(Health Risks for Heavy Equipment Operators), 건설업 종사자의 허리 관리 및 인력운반작업 (Back Care and Manual Materials Handling in Construction) 등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

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

- ※ CSAO : Construction Safety Association of Ontario
- ※ OHSCO :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ouncil of Ontario
- ※ WSIB :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
- ※ IWH : Institute for Work and Health
- ※ CRE-MSD : Centre for Research Expertise in the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Disorders

〈출처〉

http://www.csa.org/t.tools/t6.news/msd_info.cfm

〈2008년 3월 7일자 후생노동성 발표자료〉

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2002년부터 과중노동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으나, 최근 업무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종합대책을 개정하여 4월 1일자로 시행함

- ◎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장시간의 과중노동은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며 뇌·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, 장시간의 과중노동 증가 및 업무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을 근거로 과중노동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종합대책을 개정하였다.
- ◎ 주요 개정내용은 과중노동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체면담, 감독지도, 개별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건강장해 예방 강조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건강장해 예방 단체, 도도부현 산업보건추진센터 및 지역산업보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과중노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. 또한, 시간 외 휴일 노동시간이 월 45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가 의무화된다.

- ▲산업의, 위생관리자, 위생추진자 등의 선임 및 활동상황 파악, 위생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상황을 확인해야 한다.
- ▲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의를 반드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, 불가능한 경우 지역산업보건센터를 통해 건강 관련 진단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.
- ▲과중 노동에 의한 업무상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.

◎ 후생노동성에서는 과중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악화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근로자 건강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 ☺

〈출처〉

<http://www.hourei.mhlw.go.jp/hourei/doc/tsuchi/200326-a00.pdf>